

有害廢棄物의 國家間 移動 및 그 處理의 統制에 관한 바젤協約의 運用 現況*

盧明濬**

목차

- | | |
|---------------------|---------------|
| I. 序論 | IV. 巴澤協約의 問題點 |
| II. 巴澤協約의 主要內容 | V. 結論 |
| III. 巴澤協約 當事國會議의 經過 | |

I. 序論

有害廢棄物의 증가로 오늘날 온 인류는 심각한 公害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는 有害廢棄物의 양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이러한 廢棄物을 어디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커다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공업국들이 엄격한 관리법규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생산을 규제하자 이들은 첨단기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폐기물의再生利用力(recyclability)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재생이 불가능한 유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문제는 계속 남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 선진국 정부들이 이러한 폐기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자 선진국들은 이러한 물질을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 수출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 本稿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1999년도 학술세미나에서 저자가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장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과거 대부분 선진공업국간에 이루어졌으나 오늘에 와서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폐기물의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오늘날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서방선진국이 수출하는 폐기물의 投棄場化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20일부터 3일 간 스위스의 바젤(Basel)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이하 바젤협약이라 약함)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1992년 5월 5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일 가입하여同年 5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바젤협약이 체결된지 1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협약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本稿에서는 먼저 바젤協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다섯번에 걸친 협약 당사국회의의 경과를 기술하고 이 협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II. 바젤協約의 主要內容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이러한 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극소화하고 그 불법교역을 규제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하여 하나의 공동규범을 확립하였다. 이 협약이 채택됨으로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공업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선진국들도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교역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도국과의 마찰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규제대상인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협약 당사국간의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¹⁾

1. 有害廢棄物의 定義

바젤협약은 1985년 OECD가 제정한 유해폐기물에 관한 협정초안에 규정된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협약은 폐기물(Wastes)을 ‘처리되어야 할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즉 폐기물이란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가 의도되거나,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여기서 處理라고 하는 것은 제4부속서에 열거된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원회수, 재활용, 재생이용, 직접적인 재사용, 대체이용 행위에 연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처리에 연결되는 모든 활동, 예컨대 매립, 소각, 강이나 호수등과 같은 내륙수역에의 투기, 해양투기 등을 포함한다.

바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은 제3부속서에 규정된 有害한 특성을 가지면서 제1부속서에 포함된 폐기물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폐기물이다. 제2부속서에 포함된 ‘그 밖의 폐기물’도 유해폐기물에 포함되어 협약의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폐기물’에는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의 소각잔재물이 포함된다. 협약은 그 규제대상을 산업폐기물이나 가정폐기물에 한하고 방사성폐기물이나 선박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에는 바젤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방사성오염이나 해양오염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모든 핵폐기물이 제외된 것은 이러한 폐기물이 IAEA가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각국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종 협약문은 결국 핵폐기물을 특히 핵물질을 규제하는 다른 국제규제체계(international control system)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핵폐기물을 협약의 규제대상에서 정식으로 제

1) 외무부, 환경외교편람(1996), 82쪽

외하였다. 그러나 국제규제체제라는 용어가 모호하여 그 해석여하에 따라 특정한 핵폐기물이 협약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었다.

또한 선박의 통상적인 운행과정에서 생긴 폐기물로서 그 배출이 다른 해양오염관련조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도 바젤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제안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젤협약에 의하여 규제되는 물질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의하여 규제되는 물질을 명백히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이 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박의 통상적인 운행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선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중에 생긴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 제외조항을 너무廣義로 해석하는 경우 선박의 청소과정에서 생긴 有害 씨꺼기를 바젤협약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²⁾

바젤협약 제1조, 제1부속서, 제2부속서, 그리고 제3부속서는 모두 47종의 폐기물을 규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①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함유 폐기물, ② 시안, PCB, 유기인과 같은 독성 함유 폐기물, ③ 폐유, 廢酸, 폐알칼리, ④ 有機溶劑類 폐기물, ⑤ 생활폐기물, 병원폐기물과 같은 기타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³⁾

2. 一般的 義務

바젤협약상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술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

2) Katharina. Kummer, International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51-52.

3) 외무부, 앞의 책, 82-83쪽

한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할 것을 노력한다’라는 표현은 최근의 조약관행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접근방법으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有用性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대부분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⁴⁾

바젤협약은 또한 당사국에게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당사국은 협약규정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自國內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유해물질의 수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유해폐기물의 수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출국이 문제의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문제의 폐기물이 수입국에서 재활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이러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최소화의무는 생산감소의무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약한 프로그램적인데 불과하다.⁵⁾

바젤협약상 당사국은 수출될 유해폐기물이 수입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할’(managed in an environmentally sound manner) 의무가 있다. 협약은 이러한 의무를 수입국 뿐 아니라 수출국과 경유국에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폐기물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비록 개발도상국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개도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적 협력을 구하거나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젤협약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라는 용어를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

4) Michael Bo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33, 1990, p. 429.

5) Michael Bothe, ibid., pp. 429-430

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이러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⁶⁾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협약이 이와 같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라는 애매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협약당사국이 달성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⁷⁾

협약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과 관행규정을 제정하는데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각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폐기물의 운반시 운반 시작지점부터 처리지점까지 제5B부속서에 摘示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동서류(Movement document)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국제적인 규정과 표준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포장, 표시 그리고 운송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4조는 일반적인 골격(general framework)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조문은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의 행동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국은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협약은 이러한 조치의 정확한 성질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밖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협약은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일반적 의무규정은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다.⁸⁾

6) 협약 제2조 8항

7) M. Bothe, *supra* note 4, p. 425

8) K. Kummer, *supra* note 2, p. 60

3. 有害廢棄物의 越境 移動의 制限 및 禁止

바젤협약은 일정한 경우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수입금지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내법으로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물질의 수출을 허가해서도 안된다. 수입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은 허용되나 이 경우 협약상 일반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관계국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바젤협약은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유해폐기물을 수출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이러한 물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폐기물의 단순한 비당사국통과는 이 금지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제한적인 금지”규정은 당사국이 바젤협약이 확립한 규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는 비당사국과 유해폐기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비당사국이 당사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바젤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에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젤협약 제11조는 ‘제한적 금지’의 개념을 다소 수정하고 있다. 즉 협약은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의 체결은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해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행해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바젤협약의 제한적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

바젤협약의 당사국은 1994년 3월 25일에 채택된 당사국총회의 결정 II/12에 따라 OECD가입국이 非OECD가입국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決定은 재생과 재활용을 위하여 이러한 물질을

OECD가입국에서 非OECD가입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1997년 12월 31일부터 금지하였다. 이 시기전까지 非OECD가입국이 OECD국가로부터 재생용 폐기물의 수입을 계속하려면 이러한 사실을 협약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事前通告同意의 原則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은 事前通告同意節次(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PIC)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해폐기물의 수입국이나 경유국이 수출국으로부터 통고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수출국에게 명시적인 서면동의를 부여한 경우에만 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는 말한다.

바젤협약상 수출국은 수입국과 경유국에 대하여 모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수출국은 주무관청을 통하여 직접 통지할 수 있고 생산자나 수출업자를 통하여 통지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지해야 할 정보는 수입국과 경유국의 주무관청이 문제의 유해폐기물을 이동의 성질과 위험을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으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회답을 보내야 한다. 통지자가 수입국의 서면 동의를 받고 수출업자와 처리자간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서면 확인서를 수령하기전까지는 수출국이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개시하는 것을 허가해 서는 안된다.

통지를 받은 후 각 경유국은 즉시 통지자에게 통지의 접수를 고지하여야 한다. 경유국은 그 후 60일 이내에 유해폐기물의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

답신을 통지자에게 보내야 한다. 경유국의 서면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수출국이 국가간 이동을 시작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5. 不法去來와 再輸入義務

바젤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폐기물을 국가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적절한 통지가 없는 경우, 관계국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러한 동의가 위조, 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얻어진 경우, 서류와 실물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여 유해폐기물을 고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불법거래로 간주한다. 만일 불법거래로 간주되면 귀책사유가 있는 수출국은 문제의 유해폐기물을 회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귀책사유가 있는 수입국은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록 수입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수출국은 일정한 경우 수출된 유해폐기물을 자국내로 재수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계국이 동의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계약조건대로 완료될 수 없는 때, 그리고 수입국이 수출국과 사무국에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밖의 동의기간내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방식이 마련될 수 없는 경우에, 수출국은 수출업자로 하여금 문제의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재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6. 國際協力과 情報의 交換

바젤협약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0조는 기술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기술능력

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개도국이 협약규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이 규정은 유해폐기물의 불법수입으로부터 이러한 국가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유해폐기물의 생산과 국가간 이동을 최소한으로 감축시키기 위하여 이 조문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관리분야에서 당사국이 서로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해야 할 분야에는 기술적 표준과 관행의 조화, 폐기물관리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의 감축기술의 개발, 기술의 이전, 기술적 지침과 관행규범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事前通告同意節次(PIC)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정보의 교환 이외에 협약은 광범위한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이 정보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 제13조에 따른 정보의 상호교환은 주로 협약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당사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들을 즉시 잠재적인 피해예상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제13조 2항은 규제체제에 관련된 특별한 정보들을 명확하게 당사국이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처리시설,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들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당사국은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年例報告書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협약사무국은 이러한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6. 制度的・財政的 體制

협약은 전반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진 당사국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는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제문제를 재검토하고 협약을 개정하며 필요한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협약사무국은 광범위한 행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정기능도 가지고 있다. 사무국은 정보교환의 통로역할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사무국은 그 밖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사무국은 당사국이 유해폐기물의 불법거래를 적발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긴급사태시 필요한 장비와 전문인원을 당사국에 지원해 주고 있다.

바젤협약의 협상기간에는 그 운용기금을 주로 당사국의 자발적 기부와 UNEP환경기금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자체의 재정적 체제가 확립되었다. 당사국회의는 사무국의 예산을 정기으로 승인하며 각당사국의 사무국 예산분담비율을 정한다. 많은 당사국들이 適時에 신탁기금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기금에 기여하기를 계울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재정적 체제는 취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⁹⁾

III. 바젤協約 當事國會議의 經過

1. 第1次 協約當事國會議

제1차 바젤협약 당사국회의는 1992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루과이의 피리아폴리스(Piriapolis)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모두 23개의 협약이행을 위한 결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먼저 의사진행규칙(결정 I/1)을 채택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편람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결정 I/3). 이 회의는 이어서 책임보상의정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법률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되는 임시 작업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결정 I/5). 이 그룹은 바젤협약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을 가져 제2차 협약당사국회의에 그 업무의 진전상황을 보고하는 임

9) K. Kummer, *supra note 2*, pp. 74-76

무를 부여받았다. 제1차 당사국회의는 제도 및 재정에 관한 약정(결정 I/7)을 채택하고¹⁰⁾ 유럽환경계획(UNEP)에게 바젤협약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UNEP사무총장에게 제네바에 바젤협약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고 1993년도와 1994년도 사무국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 회의는 협약 당사국이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에 관한 양자, 다자 및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실을 사무국에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결정 I/9) 국별 주무당국 및 연락기관을 가능한 한 속히 지정해 줄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결정 I/10). 또한 당사국이 매년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은 이것을 요약하여 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2차 당사국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결정 I/11).

이 회의는 사무국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관리에 관한 모델국내 입법을 작성하여 당사국이 채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고(결정 I/12) 임시 위원회가 훈련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제2차 당사국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결정 I/13). 또한 UNEP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지역의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이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유해폐기물의 불법 교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UN의 타지역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요청하였다(결정 I/15).

제1차 당사국회의는 또한 바젤협약 대상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각국 및 유관기관이 서

10) 이 약정은 바젤협약 사무국의 경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하였고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협력신탁기금(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를 설립하였다. 이 신탁기금과 기술협력신탁기금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가맹국, 비가맹국 및 기타 국제기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로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고(결정 I/19) 선진국에게 최종 처리용 유해폐기물을 개도국으로 이동함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결정 I/22).¹¹⁾

2. 第2次 協約當事國會議

제2차 협약당사국회의는 1994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모두 27개의 결정사항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차 회의는 먼저 제1차 회의가 설립한 임시 작업그룹에 의한 책임보상의정서안의 작성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결정 II/1). 이어서 이 그룹에게 긴급기금의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결정 II/2)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불법교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국내입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교역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을 협약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결정 II/4).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관리에 관한 수정모델국내입법안을 승인하였고(결정 II/5)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관례(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in Flasks on Board Ships)의 이행을 위하여 사무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것을 사무국에게 요청하였다(결정 II/8).

제2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는 OECD국가에서 비OECD국가로 유해폐기물을 이동시킴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회의는 또한 1997년 12월 31일부터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하여 OECD국가로부터 비OECD국가로 유해폐기물을 이동하는 것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결정 II/12).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바젤협약대상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안을 채택하였다(결정 II/13).

11) http://www.ban.org/what_is_basel_c/cop1.html.

제2차 회의는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문서초안의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고(결정 II/14) 훈련 및 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센터의 설치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결정 II/19). 그리고 이 회의는 유해폐기물의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정생산방법(cleaner production methods)과 폐기물최소화기술(low waste technologies)을 개발하도록 협약사무국에게 요청하였고(결정 II/25) 제도, 재정 및 절차에 관한 약정(arrangements)에 관하여 몇 가지 결정을 채택하였다(결정 II/27).¹²⁾

3. 第3次 協約當事國會議

제3차 당사국회의는 1995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E.C. 및 91 개 협약당사국과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비협약당사국 그리고 UNEP, IMO, IAEA 등과 같은 정부간 국제기구와 NGO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책임보상의정서의 작성 추진 등 제2차 당사국회의와 유사한 27개 결정을 채택하였고 특히 바젤협약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Ban Amendment).

협약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최종처리를 위한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즉각 금지하고 재활용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199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결정 III/1). 즉 제3차 당사국회의는 협약 4A조에 이와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고 전문 7항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특히 개발도상국에로의 이동은 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라는 문장을 삽입하였다.

제3차 당사국회의는 또한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불법교역을 규탄하고 그 방지와 감시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결정 III/5). 그리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관리에

12) http://www.ban.org/what_is_basel_c/cop2.html.

관한 수정모델입법을 승인하였다(결정 III/6).

이 회의에서 기술작업그룹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이나 그 밖의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유해성 특징, 유해물질 분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에 관한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켰다(결정 III/12). 이 회의는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의 필요성 피력(결정 III/21)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서 발생하는 책임보상의 정서초안 작성의 조속 추진(결정 III/2) 등 제2차 당사국회의와 유사한 27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이동 금지에 관한 협약 개정문제와 협약 이행을 위한 분담금 인상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국가간에 의견이 크게 충돌하여 많은 진통을 겪었으나 최후 순간에 가서 간신히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은 이 회의에서 플라스틱,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물을 협약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사국의 분담금과 관련하여 협약사무국은 당초 100%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EU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1997년 분담금을 10%만 인상하기로 하고 부족 금액 약 100만달러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¹³⁾

4. 第4次 協約當事國會議

제4차 협약 당사국회의는 1998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11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말레이지아의 쿠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1995년 채택된 Ban Amendment¹⁴⁾의 적용대상국가 리스트인 제7 부속서¹⁵⁾의 개정문제와 기술실무그룹이 그

13) 외무부,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1995), 15쪽. 또한 http://www.ban.org/what_is_basel/c/cop3a.html 을 참조할 것.

14) 유해폐기물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15) EC 및 OECD회원국과 리히텐슈타인

동안 작성 완료한 유해폐기물 리스트의 바젤협약내 도입문제였다.

제7부속서의 개정문제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 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스라엘과 모나코는 Ban Amendment가 발효되면 각각 자기나라의 폐기물 수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현재의 폐기물의 수입을 계속할 목적에서 제7부속서를 개정하여 동 부속서의 적용대상국가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많은 개도국의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두 나라의 제안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유해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7부속서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Ban Amendment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7부속서를 개정하면 Ban Amendment의 발효를 더욱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두 나라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선진국들은 제7부속서의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동 부속서의 적용대상국가의 확대가 Ban Amendment의 채택의의를 감소시킨다는 이유에서 이집트를 위시한 대다수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Ban Amendment가 발효될 때까지 제7부속서의 개정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젤협약은 규제대상폐기물을 제1부속서(범주), 제3부속서(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여 적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제3차 협약당사국회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 목록의 구체적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1997년 2월 기술실무그룹은 2년에 걸친 작업끝에 유해폐기물을 리스트 A, 무해폐기물을 리스트 B로 분류한 후 제4차 당사국회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폐기물 리스트의 협약 내 도입문제를 사이에 두고 당사국간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EU와 칠레는 폐기물 리스트 A와 B를 각각 제8부속서와 제9부속서로 채택하고 동 리스트의 법적 구속력 부여시기를 부속서 개정 후

60일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동 리스트를 우선 지침으로 채택하고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회의는 EU/칠레안에 따라 제8부속서(리스트 A)와 제9부속서(리스트 B)로 채택하였다(결정 IV/9).

바젤협약 제12조 및 제1차 협약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책임배상의 정서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기술전문가회의가 1993년 9월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1997년 5월에 개최된 제5차 실무전문가회의는 제4차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정서 초안을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4차 당사국회의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실무전문가회의의 회기를 제5차 당사국회의 때까지 연장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는데 그쳤다(결정 IV/19).¹⁶⁾

제4차 협약당사국회의는 제5차 회의를 바젤협약이 채택된지 10년후인 1999년 12월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¹⁷⁾

5. 第5次 協約當事國會議

제5차 협약당사국회의는 바젤협약이 채택된지 10년후인 1999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되었다. 이 바젤회의는 책임보상의정서의 채택에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는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바젤선언(Base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과 36개 결정(decisions)을 채택하였다. Ban Amendment 문제는 이 회의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OECD국가와 非OECD국가의 입장이

16) 외교통상부, 지구환경정보, 제24호(1998년 3월 16일), 9-12쪽

17) http://www.ban.org/what_is_basel/c/cop4rep.html.

특히 책임보상의정서의 내용과 긴급기금(emergency fund)의 필요성을 사이에 두고 현저하게 대립하였다.

이 회의는 스위스의 로쉬(Philippe Roch)대표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3인의 부의장과 보고자를 선출하였다. 이어서 바젤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톨바(Mostapha Tolba)전UNEP총재, 아우肯(Svend Auken)장관, 그리고 토퍼(Klaus Töpfer) UNEP사무총장의 특별연설이 있었다. 특히 톨바박사는 Ban Amendment가 1995년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직 17개국만이 비준한데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는 이 개정안이 발효하기 위한 62개국의 비준을 위하여 당사국회의 의장, 협약사무국, 그리고 UNEP총재가 도처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유해폐기물의 생산이 증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폐기물 생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과 자원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¹⁸⁾

10여년간의 협상끝에 당사국회의는 회의 마지막날 유해폐기물의 越境이동과 그 처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보상의정서(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이하 책임보상의정서라고 약함)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보상의 범위, 보상책임의 한계 및 시효, 보험 및 기타 재정보증, 관할법원, 판결의 상호승인 및 집행, 가입, 탈퇴, 발효, 비준 등 모두 3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임보상의정서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유해폐기물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 의정서 제2조 2항(b)는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바젤협약 제1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3조는 수출국의 국가관할권내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시점을 의정서 적용 개시시점으로 하고 폐기물의 최종처리 완료의 통지시점이나 그 처

18) <http://www.ban.org/COP5/cop5rep.html>.

리완료 시점을 적용 終點으로 하였다. 만일 폐기물이 양자·다자·지역협정에 의거하여 교역되는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서 제4조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자와 수출자에게 과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절대적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우고 있다. 즉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을 점유할 때까지는 바젤협약 제6조에 따라 통지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부터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이때 수출국이 통지자인 경우 수출국이 책임을 지고 수입국이 통지자인 경우에는 수입국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전쟁이나 내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 공공기관의 의무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결과, 그리고 제3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상의 무과실책임과 병존하여 의정서는 제5조에서 고의·과실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무과실책임 원칙에 의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과실책임 원칙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와는 별도로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해서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손해를 받은 자가 자신의 과실로 손해의 발생원인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보상액이 경감될 수 있다(제9조).

무과실 책임의 경우 보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서의 부속서 B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책임 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제한할 수 없다(제12조). 보상청구소송은 사건발생후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3조).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그 밖의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4조).

보상청구소송은 손해발생지, 사건발생지, 또는 피고의 상주 주소지(habitual residence)나 주된 영업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17조). 소송에 관한

모든 실체 및 절차문제에는 의정서에서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제17조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실체법 및 절차법(섭외사법 포함)이 적용된다(제19조).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네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국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인된 판결은 다른 당사국에서 집행되어야 한다(제21조).

제5차 당사국회의는 회의 마지막날 책임보상의정서 외에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바젤선언'(Basel Declaration on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을 채택하였다. 바젤협약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에 채택된 이 선언은 향후 10년동안 추진할 목표로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와 능력배양의 강화(strengthening of capacity building)을 들었다. 이 선언은 바젤협약의 조속한 추가비준과 가입을 통하여 협약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 ESM)를 위하여 이 선언은 다음의 분야에 그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즉 (a) 유해폐기물의 최소화, (b) 청정기술의 개발, (c) 폐기물 원경이동의 추가적인 축소, (d) 불법교역의 방지, (e) 제도적 및 기술적인 능력 배양의 도모와 개도국에 대한 환경기술의 이전, (f) 훈련과 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센터의 추가적인 설립, (g) 정보교환과 교육의 확대, (h) 국가간, 국제기구간, 산업체간의 협력관계의 수립, (i) 협약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 등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¹⁹⁾

19) <http://www.basel.int/COP5/cop5.html>.

IV. 바젤協約의 問題點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존의 관행을 계속하려는 선진공업국과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러한 유해폐기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개도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협약은 환경론자로부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이러한 폐기물의 그릇된 國外수출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²⁰⁾ 바젤협약의 체결로 유해폐기물의 國外이동이 감소하였고 폐기물의 생산이 현저히 감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억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아직도 매년 생산되고 있어 협약의 목표달성을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약이 비록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나 주요 현안문제들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규제체계의 출현을 위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事前通告同意節次(PIC procedure), 제한적인 거래금지, 불법거래국에 대한 책임부담, 유해폐기물의 재수입 의무,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의 공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바젤협약은 기존의 환경관련협약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바젤협약이 부속서의 개정을 수월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이 협약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협약이 규제하는 폐기물의 리스트를 협약당사국회의에서 수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이 바젤협약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협약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각기 상이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예

20) David J. Abrams,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Hazardous Waste Trade : A Proposed Solu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8, no. 3, 1990, p. 802.

21) K. Kummer, *supra* note 2, pp. 79-80.

전대 협약이 유해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까닭에 각국이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 용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유해폐기물이라는 용어를 각기 자기나라에 유리하도록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 유해폐기물인 물질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해폐기물이 되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공업국사이에도 유해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명확하고 통일된 유해폐기물의 정의가 없이는 바젤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의 정의로는 협약의 적용대상인 폐기물(wastes)과 적용대상이 아닌 상품(products)과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협약상 폐기물, 유해폐기물, 그리고 재생폐기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각국의 주관적인 해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²²⁾

바젤협약이 도입하고 있는 事前通告同意節次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문제는 수출국의 단순한 통고만으로 수입국이 문제의 유해폐기물의 수입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비록 수출국의 사전통고가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수입국인 개발도상국들은高度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이와 같은 통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통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자원 또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수출국이 이러한 통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지 않으면 사전통고동의절차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폐기물을 수출하는 선진공업국에 대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기술의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젤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기술이전의

22) David P. Hackett, 'An Assessment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vol. 5, no. 2, 1990, pp. 313-317.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²³⁾

바젤협약의 가장 중요한 결점은 협약의 집행과 관련된 협약 규정상의 흠결이다. 바젤협약상 사무국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무국은 단지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만을 부여 받았을 뿐 실질적인 감시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무국이 중앙집권적인 집행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협상약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당사국이 부담하고 있어 당사국이 그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부터 야기된 국가책임과 보상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협약은 단순히 국가책임과 보상의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협력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어느 국가가 어떤 경우에 국가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혀 함구하고 있다.²⁴⁾ 그 동안 책임배상의정서의 채택을 위해 법률·기술전문가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나 최종의정서의 채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협약당사국회에서 최종책임배상의정서가 채택되어 이 법률·기술전문가회의 임무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結論

급속한 공업발달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막대한 양의 유해폐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우리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국내에서 폐기하기 어렵게 되자 각국은 국외로 수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온

23) D. P. Hackett, *Ibid.*, p. 318.

24) D. P. Hackett, *Ibid.*, p. 319-321.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과거 선진공업국 특히 OECD회원국간에 이루어졌으나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개도국들이 선진공업국들이 생산한 유해폐기물의 投棄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89년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채택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바젤협약은 이러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지구의 환경파괴를 감축 내지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서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각국간의 마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바젤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한 일종의 骨格協約으로서 후속 의정서를 통하여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협약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解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문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번의 협약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바젤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반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1999년 말에 개최된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책임보상의정서가 채택되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巨步를 내디디게 되었다. 앞으로 있을 계속적인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바젤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